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02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20.

발 의 자 : 이종배 · 엄태영 · 이만희  
안철수 · 김형동 · 김미애  
김예지 · 이달희 · 송석준  
김은혜 · 김승수 · 이종욱  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이의 확산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(이하 “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”이라 한다)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2024년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대상 기업 중 약정을 체결한 기업 비율은 66.2%에 불과하고,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.3%로 오히려 10%p 이상 감소하고 있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미비한 실정임.

하도급대금 연동 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연동 약

정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해 공정위의 이행실적 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,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(안 제3조의6).

##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6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하도급대금”을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”으로 한다.

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제3조의3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적에 관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.

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